

<p>구성하였으며, 또한 위원회는 환경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협의회 및 2개의 분과위원회 정원 외에 별도 정원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의 2에 규정하고 있으나, 이 조항을 근거로 기타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.</p> <p>○ 제1조(목적)에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주요 목적중의 하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능중 일부로 되어 환경오염 감시 활동의 축소나 경시 우려가 있고, 집행위원회 구성인원 25명 중 당연직위원으로 시공무원 7명이 자동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집행위원회가 서울시정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 기존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기본정신이 시민참여·자율이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됨.</p> <p>○ 동 조례개정안이 11월 20일~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점과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도록 한다는 점에서, 또한 위원장 3인 공동체로 되어 책임소재의 불명확, 위원장간의 권한·조정상의 문제, 사무담당위원의 실질적인 유급직화 등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.</p> <p>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효지 : 생략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: 없음(미구성)</p> <p>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8. 소수의견 :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등 국제연합 지속발전위원회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속가능("지속가능"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·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2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부의한 주요 정책·계획·제도 등의 지속가능 평가·자문 3.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,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. 환경개선·보전 프로그램 개발, 환경교육·홍보, 환경감시활동 등 <p>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중 "위원"을 "위촉위원"으로 한다.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환경관리실장·교통관리실장·시정기획관·산업경제국장·도시계획국장·건설국장·주택국장과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각각 하며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인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 1인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3인과 감사 2인을 두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의제 21실천협의회 회장과 2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집행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</p>

<p>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집행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·부위원장, 당연직위원,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,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이며,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</p> <p>③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 수립 2.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 제시 3.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·자문 및 의견제시 4.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<p>④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⑤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사무처리 등)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담당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담당위원은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</p> <p>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8조(분과위원회 등)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의제 21 실천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,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, 환경홍보·교육분과위원회를 둈다.</p> <p>②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: 서울의제 21의 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,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, 시민단체 등의 시·자치구간 협력체계 구축·운영 2.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: 보전과 개발의 통합·조정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, 제시된 시정분야별 친환경적 지침에 따른 시정구현상황 평가, 집행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. 환경홍보·교육분과위원회: 환경보전 홍보·교육, 환경개선 프로그램개발, 환경오염감시 활동 <p>③협의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의안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과장과 위원으로 참여</p>	<p>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정원 외로 한다.</p> <p>④협의회는 회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, 지속발전정책분과위원회와 환경홍보·교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되며,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총무는 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</p> <p>⑤협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협의회 위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⑥협의회·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8조의2(기타 협의회의 설치) ①위원회는 제8조의 협의회 등외에 환경을 보전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협의회 위원은 환경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,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0조제3항중 "분기마다 1회"를 "연 2회"로 한다.</p> <p>제12조중 "사무국"을 "환경관리실"로 한다.</p> <p>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제2항중 "계장"을 "사무관"으로 한다.</p> <p>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6조(지속가능성평가 등) ①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한 주요정책·계획·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·자문한다.</p> <p>②위원회는 보전과 개발을 통합·조정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6조의2(서울의제 21 실천 등) ①위원회는 서울의제 21 실천을 위한 활동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</p> <p>②위원회는 자치구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</p>
---	--

<p>을 제시하고 자문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서울의제 21 및 자치구의제 21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 등의 시·자치구간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한다.</p> <p>제1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4호를 동조제5호로 하며,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2. 환경보전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</p> <p>4.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·고발 등 감시 활동</p> <p>제18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</p> <p>제22조 중 “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”을 “관계 공무원·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”로 한다.</p> <p>제24조 중 “감시활동”을 “위원회 등의 활동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및 특례제한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등의 특례를 일부 조정하고, 건축법('99.2.8) 및 동법 시행령('99.4.30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축건축물에 기존건축물이 철거·멸실된 후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(안 제2조제1호) <p>※ 현행 : 나대지에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이 철거·멸실된 후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에 「환지방식사업」을 추가함.(안 제8조의2) <p>○ 환지방식사업 :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</p> <p>○ 대상지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도로 폭 2미터이상에 접한 주택 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지구 -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구 - 도로 형상이 부정형하거나 세장형(대지 폭 3미터미만을 말한다)으로 건축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구 <p>□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60제곱미터로 신설(안 제19조)</p> <p>□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높이제한 변경(안 제21조)</p> <p>건축법의 규정(수평거리의 1.5배 초과금지)에 의하던 것을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.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, 20세대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인 경우는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.</p> <p>□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변경(안 제21조의2)</p> <p>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던 것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 부분이 정북방향의 인접</p>	
<p>의안 번호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display: inline-table; vertical-align: middl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410</td> </tr> </table>	410	<p>1999. 12. 28 도시관리위원회</p>
410		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10월 5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○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9일 회부

○ 상정일자

-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(1999년 10월 15일) 상정, 소위원회 구성

- 제17회 정기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(1999년 12월 22일) 소위원회 심사보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주택국장 양갑)

가. 제안이유

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축건축물